#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7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 박주민·박홍배·이재관

강훈식・김한규・조 국

이용우 · 박정현 · 김 윤

모경종 · 송재봉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으나 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보수액이 아니라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사 보수를 주주들이 정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해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제542조의14 신설).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3 본문 중 "會社"를 "회사와 총주주"로 한다.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4(이사의 보수)

- ① 상장회사에서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정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보수정책 목표와 원칙, 보수산정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보수정책'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 ② 이사의 보수는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정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정책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보수정책을 부결한 때에는, 직전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정책에 따라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지급된 보수에 준하여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동 보수는 무효이다.
- ④ 상장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각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내역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이하 '보수보고서'라 한다)로 작

성하여 공시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회사나 이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 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회사와 총주주-----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2조의14(이사의 보수) ① 상 장회사에서 제388조에 따라 이 사의 보수를 정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보수정책 목표와 원칙, 보수산정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보수정책'이 라 한다)을 포함하여 주주총회 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보수는 제1항에 따 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정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 수정책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보수정책을 부결한 때에는, 직 전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정책에 따라 또는 직전 사업연 도에 지급된 보수에 준하여 보 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를 초과

<u>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동</u> 보수는 무효이다.

④ 상장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각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이하 '보수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공시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한다.

⑤ 제4항의 결의는 권고적 효 력을 가지며 회사나 이사를 구 속하지 않는다.